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병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6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전병주, 강동길, 김성준,
김영철,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서준오, 송도호,
왕정순, 이상훈, 이영실,
이용균, 임종국, 최기찬,
최재란 의원(16명)

1. 제안이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확대 시행으로 2025학년도부터 중학교 등에서 시행되는 기존 자유학기(년)제가 자유학기제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자유학기제의 영역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에서 ‘한 학기’로 변경함(안 제2조).
- 나.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 중 추진목표 및 방향, 예산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 다. 교육감이 지역사회 또는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유학기제”를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등의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학생의 소질”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로, “발견하고 다양하고 내실”을 “발견할 수”로 한다.

제2조 중 “중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로,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를 “동안”으로, “있는”을 “있도록”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제도”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유학기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중학교 등에서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유학기제</u>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u>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u></p> <p>제4조(자유학기제 지원계획) ① (생략)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등의 자유학기제 시행 --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 -----</u> -- <u>발견할 수 -----</u> -----.</p> <p>제2조(정의)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u>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u>--- 동안 ----- ----- 있도록 ----- ----- <u>실시하는 제도-----.</u></p> <p>제4조(자유학기제 지원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자유학기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u> 2. <u>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u></p>

1. ~ 3. (생략)

<신설>

제5조 ~ 제8조 (생략)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같음)

제5조(사업) 교육감은 중학교 등
에서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
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
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유학기
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 제9조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안 제2조(정의) 자유학기제의 대상을 ‘중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 운영 기간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에서 ‘ 한 학기’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 안 제4조(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은 기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참고] 2024년도 자유학기제 예산 현황

조·항	사업명	예산액
제4조 (자유학기제 지원계획)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 56,126천원 · 운영비 : 16,350천원 · 업무추진비 : 1,080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 38,696천원

자료: 2024 서울시교육청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l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